복지용구 구입

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이유로 인하여 대여할 수 없는 용구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※반드시 도도부현 등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구입해야 합니다.

※구입 시에는 담당 케어매니저와 상담하십시오.

①양변기

②자동배설처리장치의 교환가능부품

③목욕보조용구

④간이욕조

⑤이동용리프트부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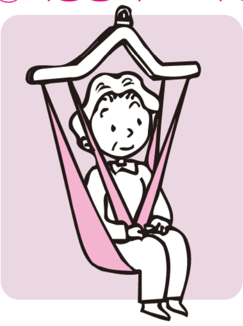

2015년부터 「①양변기」의 대상품목에 「휴대용 수세식 화장실」이 추가되었습니다.

이용 한도액	요 건
10만엔	●연간 10만엔이 한도이며 그 중 10% 또는 20%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(매년 4월부터 1년간) ●원칙적으로 같은 해에 같은 품목의 복지용구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.

주택개수

자립 및 개호에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소규모 주택개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※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 전에 공사를 시작할 경우 보험급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이용 한도액	요 건
20만엔	●20만엔이 한도이며 그 중 10% 또는 20%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●1회 개수에 20만엔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●「요개호도」가 3등급 이상 높아진 경우, 이사한 경우에는 본 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●대상이 되는 공사

①손잡이 설치
②단차 해소
③미끄럼 방지 및 원활한 이동 등을 위한 바닥 또는 통로면의 재료 변경
④미닫이문 등의 문 교체
⑤양변기로의 변기교체
⑥위 ①~⑤의 각 공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

2015년부터 「⑤양변기로 변기 교체」 대상에 「변기의 위치・방향 변경」이 추가되었습니다.

◇개호보험의 주택개수와는 별도로「고령자 주택 개수비 급부 사업」이 있습니다.